

□ “가.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 개정(안)

개 정(안)	요 청(안)	사 유
가.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 삭 제 -	• PQ 평가는 기술자의 수년간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성과도출이 목적으로 현재도 비교적 낮은 평가기준에 당해 발주되는 용역과 관계없는 경력, 실적까지 인정할 경우 설계부실에 따른 성과물의 기능저하, 붕괴사고 발생 등 각종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 PQ평가의 목적인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해서는 동일한 수행실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요청함.

□ “(3) 전차용역 수행실적”의 평가방법 개정(안)

개 정(안)	요 청(안)	사 유
나. 용역수행실적 (3)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 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 만 적용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실적 (3)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할 수 있음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전차용역은 종류(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에 따라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등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발주청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유사한 사업분야라면 복합된 여러 사업 분야 중 주 메인사업의 전차를 전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4) 용역수행평가” 평가방법 개정(안)

개 정(안)	요 청(안)	사 유																								
(4) 용역수행평가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 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tr><td>용역 평가 결과</td><td>95점 이상</td><td>95점 미만 92점 이상</td><td>92점 미만 89점 이상</td><td>89점 이상 86점 미만</td><td>86점 미만</td></tr><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table>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용역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4) 용역수행평가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일정금액 이상 용역평가 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발주청의 용역평가 결과가 3건 이하일 경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tr><td>용역 평가 결과</td><td>95점 이상</td><td>95점 미만 92점 이상</td><td>92점 미만 89점 이상</td><td>89점 이상 86점 미만</td><td>86점 미만</td></tr><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table>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용역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변별력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용역규모와 상관없이 평가되는 절대평가 방식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의나 실수로 누락한 경우는 0점 처리토록 반영 필요 - 용역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용역평가 결과도 가중치가 필요함.
용역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용역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